

중국의 수입규제 사항 및 관계법령

1. 수입관련 법규

가. 관세제도

- 중국의 관세제도는 국내산업의 보호, 수출입의 조정, 외국의 경제적 제재조치에 대한 무기 및 국가재정 수입의 주요 원천으로서의 여러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의 관세정책은 대외무역관리정책과 성질상 완전히 일치하고 정책 도구로서 상호보완적인 기능을 수행함.
- 중국관세제도에서 특기할만한 점은 관세율의 2중세율 구조인데, 하나는 보통세율이고 다른 하나는 보통세율보다 세율등급이 1~2단계가 낮고 적용세율은 최저 5%에서 최고 30%까지 낮은 최저세율 즉, 우대세율이다.
- 중국의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율은 국내외적 상황, 상품의 용도, 국내의 유관정책에 따라 달리 정해지며 관세율의 조정이 비교적 자주 이루어짐.
- 국내산업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보호관세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높고, 국제가격이 국내가격보다 싼 상품에 대한 관세율도 상대적으로 높음.

-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거나 공급이 부족하여 수입되는 품목 가운데 수입 관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되는 품목은 동식물 종자, 양곡, 비료, 사료, 약재 등임.
- 과일의 경우 관세의 별도의 증치세(부가가치세)가 부과되는데 사과와 배의 증치세는 13%임.

(1) 관세의 종류

- 중국은 수입물품에 대해 수입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함.
- 관세표준은 원칙적으로 從價稅제도를 따르고 부분적으로 從量稅제도를 부가함.
- 종가세제도가 적용되는 관세표준의 세율은 납세후 가격을 기준으로 백분율로 표시
- 1997년 7월 1일부터 맥주 등에 대해서는 종량세 부과

(2) 주요품목별 관세율

표 1. 주요 농수산물 식품별 수입세율

품 목	관 세 율			수 입 제 한
	일 반	특 혜	증치세	
쇠고기(신선, 냉동, 냉장)	70	45	13/17	수출허가증, E, R, F
돈육(신선, 냉동, 냉장)	70	20	13/17	"
계육(신선, 냉동, 냉장)	70	20	13/17	"

품 목	관 세 율			수 입 제 한
	일 반	특 혜	증치세	
태평양 연어(신선, 냉장)	40	15	13/17	E, R, F
넙치, 가자미()	40	15	13/17	"
청어, 대구, 정어리, 고등어()	40	20	13/17	"
바다가재, 새우살, 게(냉동)	70	30	17	"
굴, 조개	70	30	13/17	"
오징어, 문어	70	25	13/17	"
진달래, 장미	80	15	13	R
토마토, 양파, 양배추, 마늘, 당근, 오이, 완두, 시금치, 고추(신선, 냉장)	70	13	13/17	E, R, F(마늘 수출허가증 필요)
녹두	11	3	17	"
팥	14	6	17	"
밤, 잣, 호두	70	30	13/17	" (밤은 수출허가증 필요)
오렌지, 감귤, 레몬	100	40	13/17	E, R, F
사과, 배	100	30	13	"
딸기	80	30	13	R, F
키위	80	40	13	"
참깨	70	15	13	E, R, F
인삼(서양삼, 야생삼)	70~90	30~40	13	I, E
동충하초	20	8	13	
다시마, 미역, 김	70	25	13/17	E, R, F
참기름	20	12	13	수입허가증, I, S, E, R
국수, 라면	80	25	17	E, R, F
과일쥬스(포도, 사과, 오렌지등)	90	35	17	E, F
간장, 케찹	90	30	17	"

- 주) I : 수입시 상품검역국의 검사 요
E : 수출시 상품검역국의 검사 요
R : 동식물검역부서의 통과서류
F : 식품수입 검역부서의 증명서류
S : 일반상품 특정등기제도

(3) 관세평가제도

- 관세평가는 다음과 같은 과세가격 결정방법을 통해 결정됨.
- 수입화물은 세관이 심사 결정한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CIF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함.
- 즉,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 표준은

원칙적으로 CIF가격임.

- CIF가격은 화물의 원래 가격에 그 화물이 중국의 수입지점에 도착하여 인도될 때까지 들어간 모든 비용이 합해진 가격임.
- 여기에 포함되는 비용에는 포장비, 운송비, 보험료, 기타 노무비, 중국에서 제조, 사용, 출판 또는 발

행목적으로 외국에 지불된 특허료, 상표이용료, 저작권 사용료, 전문 기술료 등이 망라됨.

- 그러나 세관의 심사예외에 의해 수입 화물의 CIF가격이 확정되기 어려운 경우엔 아래 순서에 따른 가격을 기초로 하며 수입관세의 표준이 결정됨.
 - 해당수입화물의 수출국이나 수출 지역으로부터 중국이 구매한 화물과 유사한 화물의 거래가격
 - 해당수입화물과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제시장 거래가격
 - 해당수입화물과 같거나 유사한 화물의 국제시장도매가격에서 수입 관세, 수입과정에서 부과된 기타 조세, 수입후의 운임, 보관료, 영업비 및 이윤이 공제된 금액, 기타 세관에 의해 합리적으로 산정된 가격
- 관세산출방식 : CIF가격 × 관세율

(4) 원산지 규정

- 수입화물 원산지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원산지를 확정
- 완전히 1개 국가에서 생산 또는 제조된 수입화물의 원산지는 생산 제조국이 됨. 여기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
 - 해당국 영토(영해)내에서 채굴한 광산물, 해당국 영토내에서 수확, 채집한 농림수산물, 해당국에서 수렵, 어획 또는 양식한 동물 및 그 산품
 - 해당국 선박에서 하역한 어획물, 해상에서 취득한 기타 산품 및 해당국 가공선에서 전술한 산품을 가공하여 얻은 산품
 - 해당국에서 상술한 산품을 전량 사용하여 가공한 완제품
- 몇개 국가를 거쳐 가공 제조된 수입화물은 경제적으로 실질적인 가공국가라고 볼 수 있는 곳을 원산지로 함.
- 기기, 제척기, 기재 또는 차량에 소요되는 부품, 예비품 및 공구 등이

주제품과 동시에 수입되고 그 수량이 적절한 경우, 주제품의 원산지를 원산지로 봄. 그러나 각각 수입될 경우는 각각의 원산지로 구분

- 수입화물의 원산지는 주제품의 원산지로 확정하며 신고인은 세관규정에 따라 화물의 원산지 또는 구매지를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함.
- 동일한 화물의 원산지가 같지 않을 경우 구분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세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신고인은 관련 외국의 증명발급기관이 발급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홍콩, 마카오, 대만, 중국대륙에서 생산된 화물은 우대관세율을 적용하며 보통관세율을 적용받는 수입화물도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의 특별승인을 받으면 우대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음.

(5) 관세법 위반시 제재조치

- 관세가 납부된 이후에 부과된 관세액이 규정된 금액보다 적거나 징수가 누락된 부분이 있을 경우에 세관은 관세 납부 또는 화물통관일부터 1~3년 이내에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추가 징수를 하게 됨.
- 세관의 착오로 추가징수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의 추정기간은 1년이지만, 납세자 또는 그 대리인이 규정을 위반하여 고의로 과소징수 또는 징수누락이 발생하도록 하였을 경우의 추정기간은 3년 이내로 연장됨.
- 관세법 위반에 대한 처벌은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과 중화인민공화국세관법 행정처벌실시세칙에 의해 위반 정도에 따라 다양하게 적용됨.

나. 검역제도

- 중국의 검역제도는 1996년말까지는 수출입상품검사제도의 일환으로 실시되었으나 1997년 1월 일부러는 국무원령으로 입출국 동식물 검역법

실시조례가 도입되어 모든 수입 동식물과 그 수송에 관련된 화물과 물품에 대해 반드시 검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수입동식물과 물자를 통한 전염병의 오염을 미리 막으려는데 그 목적이 있음.

- 수입농산물은 상품검역국의 상품검사, 위생검역국의 위생검사, 동식물검역소의 식물검역을 받아야 하며 과일도 마찬가지임.
- 과일에 대한 식물검역의 경우 우리나라는 수입금지국가에서 제외되어 PRA(Pest Risk Assessment) 등 정밀검사를 받지 않아도 됨.
- 수입수산물도 동식물검역발행통지서와 식품검역합격증명서를 받아야 함.

(1) 동물검역제도

(가) 검역내용

-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 동식물검역법 제1장 제4조에 근거하여 국경동식물검역기관은 검역실시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승선, 승차하여 검역 실시
 - 항구, 공항, 기차역, 우체국 진입 및 검역물 저장, 가공, 양식, 재배 장소에 대해 검역을 실시하고 규정에 따라 샘플을 채취
 - 검역상 필요할 경우 관련 생산, 창고 등 장소에 진입하여 전염병 상황에 대해 검사, 검역 감독관리를 진행
 - 검역물 관련 운행일지, 선적 서류, 계약서, 상품송장 및 기타 증명서류의 열람, 복사 및 발취를 할 수 있음.

(나) 검역처리

- 수입동물이 검역에 합격되었을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격리검역기한 만료시 그날로부터 화주 혹은 대리인에게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발행통지서를 발급 통관함.
- 수입동물이 검역을 거쳐 합격되지 않았을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중화

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아래와 같은 처리를 하며 또한 국가동식물검역기관에 통보함.

- 1류전염병, 기생충병 동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同行동물도 같이 반송되거나 전부 포살 또는 시체를 소멸시킴.
- 2류전염병, 기생충병 동물이 검출되었을 경우 병에 걸린 동물은 반송 혹은 포살 및 시체를 소멸시킴.
- 2류전염병, 기생충병 이외의 기타 전염병, 기생충병이 검출되었을 경우 국가동식물검역기관에서는 그 위험도에 따라 대응 처리함.
-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처리 통지서가 발급되면 화주 혹은 그 대리인은 즉시 동식물검역기관에 위탁하여 처리를 함.
- 이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규정은 실제지출에 따라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처리비용을 청구함.
- 처리비용에는 동물포살비, 동물해부 검사비용, 동물시체 외부포장비, 소독비(장소사용료, 운송공구, 포장물 등), 운송비(인원, 차량), 시체처리 비용 등의 항목이 포함됨.
- 수입한 동물제품이 검역에 합격되었을 경우 동식물검역기관은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 검역통행 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 및 그 대리인은 이 증명서를 근거로 세관에 신청하여 수입수속을 끝낸 후 가공 사용할 수 있음.
- 수입동물산품이 검역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동식물 검역기관은 다음과 같은 처리를 할 수 있음.
- 혼중, 소독, 살균을 거쳐 수입할 수 있을 경우 화주 또는 그 대리인의 가공소독 처리를 감독하고 합격 후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 통행통지서를 발급하여 수입통관 시킴.
- 소독살균처리를 진행할 수 없거나 소독살균처리를 해도 합격요구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 및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물품을 반송처리케 함.

- 반송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폐기처리되므로 수입통관할 수 없음.

(2) 식물검역제도

(가) 검역내용

- 入境處인 공항, 부두, 기차역에서 탑승, 승선, 승차하여 검역을 진행하는 데 적재물품의 선창 혹은 차량 적재함 주변, 구석 및 포장물, 깔개, 잔여물 등 해충이 쉽게 잠복, 은신하는 곳에 대해 검사함.
- 물품저장창고나 장소를 검사하고 물품 표면, 더미, 주위환경 및 포장외부에 해충 및 해충매설물, 분비물, 탈피, 탈각, 충란, 즙 등 해로운 흔적이 있는가를 주의하여 검사함.
- 여객이 휴대, 우송한 식물 및 식물제품 검사시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 해충검사를 위주로 하고 해충유무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함.
- 우선 식물 및 식물제품의 외부포장을 검사한 후 내부검사를 하며 위험성 병·해충, 잡초 혹은 기타 흔적을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검사에 따라 통과됨.

(나) 검역처리

- 검역처리는 수출입 식물, 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적재용기, 포장물과 운송수단 및 차량, 전용 운송공구, 격리검역장소, 적재장소, 창고와 가공장소의 불합격에 대해 방제, 보호조치를 강구함으로써 병해충의 국경진출입을 방지함.
- 수출입식물, 식물제품과 기타검역물에 대한 검역을 통해 식물검역 위험성 병·해충, 잡초발견시 해당지역 국경동식물검역기관에서 검역처리 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 혹은 그 대리인에게 통지하여 유해제거, 반송 혹은 폐기처리를 하게 하며 유해제거처리를 거쳐 합격된 물품은 수출입을 허가함.
- 검역처리를 거친 후에도 합격하지 못할 경우에는 수출입을 불허하며 원천봉쇄 보관하고 운송수단으로부터

터 하역하지 못함.

- 만약 현장에서 위험성 해충을 발견했을 경우에는 즉시 농약을 뿌려 살포 방역해야 함.
- 유해제거처리의 방법으로는 훈증, 소독, 냉처리, 열처리 등이 있으며, 제한조치에는 항구이전시 물품하역, 용도전환, 사용범위, 사용시간, 사용지점, 가공방식, 가공조건 등의 제한 등이 있음.

(3) 수산물검역제도

수산물의 검역내용과 검역처리는 동식물 검역제도와 식품위생검역제도에 준함.

(4) 수입금지품목 및 지역

- 중국 농, 임, 축산, 어업의 생산과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일부 외국에서 수입한 물품 중 중대한 식물전염을 초래하고 농, 임, 축산, 어업에 심각한 재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련 법률, 법규, 정관을 공포하여 수입을 엄격히 제한하는데, 수입금지물품이란 위험성 유해생물, 위험성 유해생물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매개체를 말함.
 - 동식물 병원체(균종, 독종 등 포함) 해충 및 기타 유해생물
 - 동식물 전염이 유행하는 국가와 지역의 관련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 동물시체
 - 토양
- 위에 상술한 규정 중 동식물, 동식물제품과 기타 검역물에 대해서는 현재 농업부는 92년 6월 8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에서 휴대, 우편으로 수입금지된 동물, 동물제품과 기타 검역물 목록과 92년 9월 25일 공포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입식품 검역시 수입물품 금지목록에 의거 집행한다.

表 2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품목(도표참조)

수입금지품목	금지원인 (위험성 병해충 전염방지)	금지 국가 및 지역
옥수수 (ZEA MAYS) 종 자	옥수수 세균성 枯萎병균 ERWINIA STEWARTII (E.F.SMITH) DYE	아시아 : 베트남, 태국 유럽 : 독립국가연합, 폴란드, 스위스, 이태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 미 주 : 캐나다, 미국, 멕시코
대 두 (GLYCINE MAX) 종 자	대두 전염병균 PHYTOPHTHORA MEGASPERMA(D) F. SP. GLYCINEA K. & E.	아시아 : 일 본 유럽 : 영국, 프랑스, 독립국가연합, 독일 미주 : 캐나다, 미국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감 자 (SOLANUM TUBEROSUM) 球莖 및 기타 번식용	馬鈴薯黃矮病毒 POTATO YELLOW DWARF VIRUS 馬鈴薯掃頂病毒 POTATO MOP-TOP VIRUS 馬鈴薯金線蟲 GLOBODERA ROSTOCHIENSIS(STONE) MULVEY & STONE 馬鈴薯癌腫病菌 SYNCHYTRIUM ENDOBIOICUM(SCHILB) PERCIVAL	아시아 : 일본, 인도, 파키스탄, 레바논, 네팔, 이스라엘, 미얀마 유럽 :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독립국 가연합,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불가리아, 핀란드, 벨기에,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아프리카 : 튀니지, 알제리, 남아공, 케냐, 탄자니아, 짐바브웨, 미 주 : 캐나다, 미국, 멕시코, 파나마, 베 네주엘라, 페루, 아르헨티나, 브라 질,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榆 屬 (ULMUS SPP.) 苗, 插條	榆枯萎病菌 CERATOCYSTIS ULMI (BUISMAN) MOREALL	아시아 : 인도, 이란, 터키 유럽 : 각 국 미 주 : 캐나다
松 屬 (PINUS SPP.) 苗, 接穗	松材線蟲 BURSAPHELENCHUS XYLOPHILUS (STEINE & BUHRER NCKLE 松突圓蚧 HEMIBERLESIA PITYSOPHILA TAKAGI	아시아 : 인도, 이란, 터키 유럽 : 프랑스 미 주 : 미국, 캐나다
고 무 (HEVEA SPP.) 芽, 苗, 씨	고무 남미 葉疫病菌 MICROCYCLUS ULET (P.HENN.) VON ARX	미 주 : 멕시코, 중남미 각국

수입금지품목	금지원인 (위험성 병해충 전염방지)	금지 국가 및 지역
담 배 (NICOTIANA SPP.) 잎담배 번식재	煙霜梅毒病 PERONOSPORA HYOSCYAMT DE BARY F.SP.TABACIA(ADAM.) SKALICKY	아시아 : 미얀마, 이란, 예멘, 이라크,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터키 유럽 : 각 국 아프리카 :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미 주 : 캐나다, 미국, 멕시코, 과테말라, 살바도르, 쿠바, 도미니카, 브라 질,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양주 : 각 국
과일 및 가지, 고추, 토마토	地中海파리 CERATITIS CAPITATA (WIEKEMANN)	아시아 : 인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시리 아, 레바논, 요르단, 파키스탄, 이 스라엘, 키프로스, 터키 유럽 : 헝가리, 독일,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몰타, 유고슬라비아, 알바니아, 그 리스 아프리카 : 이집트, 리비아, 튀니지, 알제리, 모로코, 세네갈, BURKINA FASO, 말리, 기니, 시에라리온, 리비아, 가나, 베닌, 니제르, 나이지리아, 토나, 카메룬, 수단, 이디오피아, 케냐, 우간다, 탄자니아, 루안다, 부룬디, 자이르, 앙골라, 잠비아, 말라위, 모잠비크, 마다가스카르, 모리셔스, 레위니옹, 짐바브웨, 보츠와나, 남아프리카 미 주 : 미국(하와이 포함), 멕시코, 과테 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 라과, 파나마, 자메이카, 베네주엘 라, 페루, 브라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대양주 : 오스트레일리아

(5) 검역절차 및 유형

- 검역법에 의해 중국에서 검역받아야 하는 품목은 매우 광범위함.
- 수입검역대상물이 수입금지 품목일 지라도 실제 검역을 받지 않고 검역당국의 심사만으로 중국국경을 통과할 수도 있음.

- 검역검사만으로 국경을 통과하려면 일정한 조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검역심사의 수속은 무역계약 또는 협의서가 확정되기 이전에 끝나야 함.

- (가) 수입동물, 동물제품에 대한 현장검역
 - 수입동물, 동물제품의 수입항구 도

- 착시 항구 동식물검역기관은 獸醫 검역인원을 파견해 탑승, 승차하여 수입동물에 대해 임상검사를 진행함.
- 이 때 동물전염병, 기생충병의 조짐 여부, 外傷과 사망 유무를 중점 검사하고 수입동물 제품에 대해 외부 포장의 완전여부, 산물포장과 포장 손실품의 유무, 동물제품의 변질, 부패 등을 검사함.
 - 수입동물, 동물제품의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는데 예를 들면 수입허가증, 검역신청서, 수입국가나 지역의 정부 동식물검역기관에서 발급한 동식물검역증서, 동물건강증서, 獸醫 위생증명서, 동물제품검역증, 동물제품 수출증서, 훈증소독증서 또는 수출국이나 지역의 수의위생당국에서 발급한 기타 증명서류 등임.
 - 상술한 증명서류는 선적서류, 계약서, 상업송장, 수입동물, 동식물산품 종류, 수량, 산지, 포장, 표시 등과의 부합여부를 확인함.
 - 운송인 혹은 호송인에게 수입동물의 운송 중 운행노선, 도중정착지 및 동물의 운송수단(선박, 비행기) 이 탈현상 유무를 확인함.
 - 현장 소독실시대상은 수입동물, 동물제품 적재에 대한 운송수단, 포장용기, 포장물, 받침재료 등임.
 - 동물을 적재한 운송수단의 적재창고, 상자, 사료, 사육용기, 동물하역인원과 모든 동물을 접촉한 사람도 검사함.
 - 수입한 동물, 동물제품을 반아가는 적재 운송기구, 적재용기 등 수입동물에 대한 상·하역 현장의 오염된 곳도 검사함.
 - 상술한 검사를 거쳐 완전히 합격된 것은 검역 요원이 검역처리통지서를 발급하고 화주나 그 대리인은 이 증명서를 근거로 세관에 통관수속을 신청함.
 - 검역수요에 근거하여 동식물 검역요원은 수입현장에서 채취한 동물제품 샘플을 실험실에 보내 검사할 수 있음.
 - 샘플채취시 중화인민공화국 동물검역 샘플채취에 의거 기재사항과 서

류를 제출하고 성실하게 샘플 품종, 수량, 중량 등을 기재해야 하며 화주, 대리인은 이 증명서를 소지하고 세관에 가서 수입통과 수량확인을 신청함.

- 수입시 격리 검역할 필요가 있는 동물은 동식물 검역요원의 감독하에 지정 격리장소에서 격리 검역을 실시함.
- 수입동물의 현장검역시 국가에서 규정한 1류전염병, 기생충병에 감염된 조짐이 보이면 즉시 하역정지, 현장 봉쇄를 하고 가장 빠른 방법으로 주 관 책임자, 국가동식물검역기관과 해당 지방정부에 보고함. 동시에 하역 현장에 대해 효과적인 소독 방역조치를 실시함.
- 수입동물제품의 현장검역시 부패, 변질 혹은 심각한 전염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수입을 거부하고 화주, 대리인에게 반송할 것을 통지할 수 있음.
- 만약 외부 포장이 터지거나 산물포장 중 문제가 발견되면 운송담당자, 화주에게 재포장 완료 후 수입할 것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식물검역 기본절차

- 공항, 부두, 기차역 등 입경처에서 탑승, 승선, 승차하여 검역을 진행하는데 적재물품의 선창 혹은 차량 적재함 주변, 구석진 곳 및 포장물, 깔개, 잔여물 등 해충이 쉽게 잠복, 은신할 수 있는 곳에 대해 검사함.
- 물품저장창고나 장소를 검사하고 물품표면이나 주위환경 및 포장외부에 해충 및 해충배설물, 분비물, 탈피, 탈각, 충란 등이 있는가를 검사함.
- 여객이 휴대 또는 우송한 식물 및 식물제품을 검사할 시에는 일반적으로 현장에서의 해충검사를 위주로 하고 해충유무에 대해 집중검사를 진행
- 우선 식물 및 기타 다른 이상 유무를 발견하지 못할 경우 검사에 따라 통과함.
- 수입과일은 중국 수입식물검역대상

명단과 식물검역 쌍방협정 중 규정한 검역대상 혹은 대외무역 계약 중 규정한 검역대상 및 검사를 해야 할 병충 잡초를 검역함.

- 수출과일검역은 식물검역의 쌍방 협정 중 규정한 검역대상 및 대외무역 계약 중 규정한 검역대상 및 검사를 해야 할 병충 잡초 혹은 검역신고자의 검역요구에 따라 실시함.
- 수출입과일의 검역은 주로 현장검사인데 필요시 일정량의 샘플과 현장에서 검사 발견된 이상이 있는 과일을 함께 실험실에 가져가서 실내검사를 진행함.
- 수입과일검역에는 상대방 국가의 전염상황을 파악하여 물품도착상황을 종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 수출과일검역은 주로 생산지 검사임.
- 생산지 검사는 응당 관련단위와 협조하여 산지 병충해 조사를 잘 수행하고 검사요원을 협조 교육시키며 공동으로 검역업무를 수행해야 함.
- 육안검사: 검사물품의 포장 개봉, 교환과 박스개봉에 대해서는 육안 혹은 확대경으로 검역성 병·해충, 잡초씨의 유무를 직접 관찰함. 접목, 원목, 잎담배, 과실 등에 대해서는 뿌리, 가지, 줄기, 껍질층 내외, 잎, 발아부위와 과실표면, 꽃받침, 과실 줄기 등에 좁구멍, 벌레길, 충영, 충란, 병증, 병반, 종양 및 산벌레, 병영, 균핵, 잡초씨 등의 유무를 검사함. 면화씨 등에 대해서는 포장천의 내벽, 무명실 표층, 면화씨 이물 등 검역성 해충의 유무를 주의깊게 검사해야 함.
- 환목체검사: 서로 다른 체눈 직경의 규격 환목체로 해충을 분리 검출함. 곡물, 油料와 과일형 건과, 생약재 등 식물산품에 대해 전체 물품중 서로 다른 부위에서 일정한 건수 혹은 수량의 샘플을 채취하여 규격 환목체를 이용하여 회전법으로 선별검사하고 쳐서 나온 것과 남아있는 부분 중에서 해충, 균영, 잡초씨, 식물 殘體등을 자세히 검사하여 식별분류를 진행하고 필요시 指形管에 넣어 실

내감정을 함.

- 곡물, 油料, 콩류 등 알맹이 형태의 대소에 따라 아래와 같은 체눈의 규격 환목체를 사용함.

현장샘플검사 및 채취: 샘플 채취 건수규정

- 수입과일: 육상운송에 의한 수입은 트럭의 각 부위 혹은 적재교환 과정 중 품종등급과 결합하여 상황을 참작 수시로 총건수의 1~3%를 채취 검사함.
- 해상운송에 의한 수입은 적재창고 각 부위에 따라 상황을 참작 수시로 총건수의 0.2~3%를 채취 검사한다.
- 수출과일: 원산지 검사는 매차례 서로 다른 품종, 등급별 및 조별로 각 부위에 따라 총건수의 2~5%를 채취 검사하고, 항구검사는 제상황을 고려하여 총건수의 0.1~1%를 채취 검사함.
- 씨앗류: 물품 총건수의 5~20% 채취검사
- 곡물, 油料, 콩류: 총건수의 0.1~5% 채취검사, 산물포장 물품은 100킬로그램을 한건으로 간주하여 계산
- 면마, 섬유류: 물품 총건수의 1~10% 채취검사
- 건과, 건조야채, 신선과일, 채소류: 물량 총건수의 0.2~5% 채취검사
- 생약재, 잎담배류: 물량총건수의 0.5~5% 채취검사
- 원목, 죽류: 물량총건수의 0.5~5% 채취검사
- 기타 식물제품: 상술 각류를 참조하여 처리한다. 상술비례에 따라 샘플 채취의 최저수량은 씨앗류 10건 혹은 100그루보다 적어서는 안되고 기타 각류는 5건보다 적어서는 안됨.
- 검역항목 실제수요에 근거하여 일정량의 대표샘플을 채취함.
 - 대추, 대추야자, 양과, 마늘, 건조야자, 종려나무씨는 2,000~2,500gr. 채취
 - 땅콩, 옥수수, 대두, 참두, 강남콩, 피마씨는 1,000~1,500gr. 채취

- 벼, 쌀, 밀류, 수수, 녹두, 팥, 면화씨는 1,000gr. 채취
- 조, 좁쌀, 참깨, 아마씨, 대마씨, 들깨씨, 겨자씨, 유채씨는 500gr. 채취
- 채소, 목포종자 및 낙엽송, 느릅나무종자는 100gr. 채취
- 잎담배, 백양나무, 유칼립투스, 녹나무 등 작은 종자는 10~30gr. 채취
- 생약재와 기타 식물산품은 상술 각항 처리를 참조함.

(다) 검역비용 납부 요령 및 주의사항

- 검역신고시 우선 50%의 검역비를 납부함.
- 검역신고후 여하한 원인으로 검역취소시 서면으로 취소신청을 제출해야 함.
- 검역취소시 검역이 준비되지 않았을 경우 30元의 취소수수료를 수취하고 이미 검역준비가 되었을 경우 검역비기준 50%를 수취하며 검역을 시작했을 경우 검역비 기준 100%를 수취함.
- 검역합격된 수출 검역물에 대해 수입국의 검역요구 변화로 인해 포장을 바꿔야 할 경우 검역유효기한이 지난 중요한 새로운 검역은 규정에 따라 검역비를 수취하며 그 중 이미 검역이 끝난 물품을 유효기한내 검역요구를 바꾸면 50%의 검역비를 받음.
- 동식물 검역기관에서 비용 청구서를 발송한 후 20일 이내에 검역신고 단위 혹은 개인은 검역비 전액을 납부해야 하며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제21일부터 매일 미납부한 검역비의 0.5%에 해당하는 체납금을 추가로 수취함.

(6) 검역기관 및 위법행위 처벌 종류

- 동식물과 그에 관련된 품목의 수입 검역은 중화인민공화국 동식물검역국이 관할함.
- 국가동식물검역국의 중국수출입검역연구센터가 96년 10월 22일 설립되었는데, 국가상품검역국 상품검역연구소내에 본사가 있고, 광둥성, 호북성 상품검역국 및 광주, 무

한식품검역연구센터에 지사가 있음.

- 연구센터의 기본임무는 유관수출입 식품의 법정 검역의무, 위탁검역, 지정검역과 중재검역을 접수 처리하는 것임.
- 또한 수출입 식품의 품질, 영양, 안전, 위생의 검역기술과 검측방법을 연구 개발하고 유관식품수출입 검역의 업종표준과 국가표준을 제정 및 개정함.
- 동식물검역기관에서 실시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주로 다음과 같음.
 - 경고 : 경고는 경미한 위법행위를 범한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한 경계인데 비평교육의 역할도 있고 징벌성격도 있음.
 - 벌금 : 벌금은 위법행위가 있는 단위 혹은 개인에 대해 경제적인 손실을 주는 동식물 검역의 위법처벌 중 가장 많이 응용되고 있는 일종의 제재수단임.
 - 영업허가증 취소 : 등록증, 검역증 혹은 동식물 및 동식물 제품을 수입 경영할 수 있는 영업허가증을 취소함.
 - 형사처벌 : 위법행위가 엄중한 자는 사법기관에 통보하여 그 형사 책임을 추궁함.

다. 식품위생제도

- 중국식품위생법의 규정에 따라 중국에 수입되는 식품은 수하인이 통관수속 전에 수출입 상품검사기관에 상품검사를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함.
- 수입식품이 중국의 위생기준 및 위생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오염상황 및 위해정도에 근거하여 반품, 소각, 전용(轉用) 또는 무해처리를 한 후 식용에 제공해야 함.

(1) 검사제도

- 수입상품이 도착되면 상품 檢驗局에 검사신청을 하고 검사기관에서는 통관신고서에 검사신청이 접수

되었다는 등록접수인을 날인하며 검사합격된 상품에 대해서는 검사증서를 발급함과 동시에 통과허가증 또는 통관신고서상에 합격인증을 날인을 함.

- 식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항구 식품 위생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고 식품위생검사소에서 발급한 검사증서를 세관에 제출함.
- 성분 및 함량, 위생(식품의 경우) 검사를 진행하면 조사품목당 평균 125원의 검사경비가 소요됨.
- 중문스티커 부착 상품의 경우 품목당 스티커 허가비 300원이 소요됨.
- 기타 제비용으로 항구사용료 150원, 출고비 200원, 통관수속비 300원, 제양식대 100원 등이 소요됨.

(2) 검사방법

- 검사지점은 대외무역계약 또는 운수계약 이내 약정한 경우에는 약정한 지점에서 검사를 하고 검사지점을 약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역항구, 도착역 또는 검사기관에서 지정한 지점에서 검사를 실시하며, 변질이 쉬운 식품이거나 분산 포장된 식품 또는 수량 중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반드시 하역항구 또는 도착역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함.

(3) 부류별 검사기준

- 검사기준은 일차적으로 법률 행정법규의 강제성 기준에 근거하고 법률 행정법규에 강제성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대외무역계약서에서 약정한 검사기준에 따르며, 견본품에 의해 거래한 경우에는 견본품에 의함.
- 그러나 법률 행정법규상의 강제성 기준이 계약서 상에 약정한 검사기준보다 낮은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약정한 검사기준을 근거로 하여야 함.

(4) 식품검사관련 등록절차

- 중화인민공화국 상품검사법 실시조

례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식품의 검사절차는 검사신청, 검사확인, 클레임 교환 반환처리, 사전검사, 제조검사, 선적검사 등의 순서에 의함.

- 검사신청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짐.
 - 법정검사가 필요한 수입식품이 도착하면 수하인은 양륙지 또는 도착지의 상품검사기관에 검사신청을 함.
 - 검사기관에서 통관신고서에 검사신청이 접수되었다는 등록접수인을 날인하고 세관은 신고서에 날인된 검사등록인에 근거하여 통관함.
 - 수하인은 기한내에 계약서, 송장, 포장명세서, 선하증권(B/L) 등 필요한 서류를 상품검사기관에 제출하고 규정된 검사장소에서 검사를 받음.
 - 검사확인은 검사기관에서 직접 수행하며 검사확인을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 또는 사용할 수 없음.

(5) 식품표시제도(라벨링 등)

- 수입식품과 관련된 라벨링규정으로 수출입 식품 라벨관리규정과 수출입 식품에 부착되는 식품라벨관리 검사규정이 있음.
- 이들 규정에 따르면 중국국가 수출입상품검사국에서 설립한 수철입식품라벨등록 자문사무실이 수입식품 품질표시 내용과 양식에 대한 등록, 등록증 발급과 검사를 관장함.
- 수입식품라벨은 반드시 등기증과 인가번호를 취득해야 사용할 수 있으며 수입식품라벨은 식품을 수입할 때마다 검사를 받아야 하고 검사를 받지 않은 식품은 판매를 할 수 없음.
- 1998년 11월 6일 국가품질기술감독국은 2000년 1월 1일부터 강제성국가표준 GB 7718-1994 식품표기통용표준 중의 5.2.2항에 새로운 조항을 사용한다고 공포하였음.
- 새로운 조항은 "5.2.2조항의 각종 배합원료는 5.1조항의 규정에 따라

- 구체적인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함.
- 식품첨가제는 GB2760규정에 정한 제품명칭 혹은 종류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그 중 단맛제, 방부제, 착색제는 구체적인 명칭을 적어야 함.
 - 예를 들면 용성사카린, 안식향산, 焦糖色을 현재는 단맛제, 방부제, 착색제로 표시할 수 있지만 2000년 1월 1일부터는 반드시 용성사카린, 안식향산, 焦糖色으로 표기해야 함.
 - 식품표시사항, 각종 수입포장식품 즉, 판매포장식품의 라벨은 아래와 같은 내용이 표기되어야 하는 동시에 원산국, 地區와 산지, 수입상의 상호, 주소가 표기되어야 함.
 - 곡물 및 그 가공식품(쌀, 밀가루 등)
 - 식품명칭, 순합량, 포장(생산)일자, 품질 등
 - 전용밀가루(예를 들면 만두피밀가루, 찜빵밀가루)와 두가지 이상의 혼합곡물 혹은 가공식품은 반드시 혼합물이 표시되어야 한다.
 - 곡물복제품(라면, 쌀가루, 냉동만두 등)
 - 식물명칭, 순합량, 포장(생산)일자, 품질 등
 - 만두 혹은 찜빵의 내용물 원료배합도표 중의 야채는 구체적인 품종을 표기할 수 있고 時冷菜蔬라고 표기할 수도 있음.
 - 수입油料와 식용유지
 - 식품명칭, 순합량, 생산(포장)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품질 등급, 혼합유지는 반드시 원료배합도표가 표기되어야 함.
 - 수입가금육 제품
 - 식품명칭, 원료 배합도표(단일한 냉동 가금육제품은 면제할 수 있음), 순합량(냉동 가금육제품은 냉동전의 給水함량을 표시), 포장일자, 품질 보관기한
 - 소세지는 전분함량을 기재해야 함.
 - 수입설탕(백설탕, 綿砂糖(최상급백설탕), 각설탕 등)
 - 식품명칭, 순합량, 생산일자
 - 수입 유유 및 유제품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단일한 소

- 독우유는 면제할 수 있음),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저장 유효기한, 보관방법
- 우유가루는 단백질, 지방, 설탕 함량과 품질등급을 표기해야 함.
- 수입수산물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단일한 냉동수산물은 면제할 수 있음), 순합량(냉동수산물은 냉동전 급수 순합량을 표기함), 가공생산(포장)일자, 품질유효기한
- 수입과일 채소제품
 - 과일설탕절임, 과일잼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 과일채소 건조제품, 건조식용버섯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단일한 과일채소 건조제품은 면제할 수 있음), 순합량, 생산(포장)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 열장채소류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이 함유된 장류로 절인 채소는 반드시 고체물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 씨, 견과, 볶음류(땅콩알, 호두, 살구씨, 오이, 호박, 수박씨 등)-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수입전분 및 전분제품
 - 전분 : 식품명칭, 순합량, 생산(포장)일자
 - 전분제품(살구씨 분말, 연뿌리 전분, 당면)-식품명칭, 배합원료도표(단일원료의 당면은 면제할 수 있음),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당면 면제)
- 수입알제품(피단, 소금에 절인 알류, 계란분, 氷鷄全蛋)-식품명칭,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 수입식품(찌거나 구워서 만든 과자, 빵 등)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 수입사탕, 초콜렛 : 식품명칭, 원료

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보관 유효기한

- 각설탕, 초콜렛, 껌은 식품명칭, 원산국 지구(홍콩, 마카오, 대만), 판매상 명칭만 표기할 수 있고 판매포장에는 전부 표기해야 함.
- 초콜렛은 코코아유지의 함량을 표기해야 한다. 코코아류, 대용 코코아를 이용하여 생산한 초콜렛은 특별표기해야 함.
- 수입차(花茶, 綠茶, 烏龍茶) : 수입명칭, 원료배합도표(花茶에 한함), 순합량, 생산일자, 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품질등급
- 수입통조림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고체, 액체 두가지 물질이 포함된 통조림(파인애플 통조림)은 고체물 함량(질량 혹은 백분율로 표시)을 표기해야 함.
- 수입조미료
 - 간장, 식초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식초는 면제할 수 있음) 간장은 아미노산 함량, 식초는 총산함량을 표기해야 함.
 - 식용염 : 식품명칭, 상품유형, 순합량, 포장일자 복합식염(요드 염, 불소 염)은 원료배합도표를 표기해야 함.
 - 미원(글루타민산 함량 80%이상)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글루타민산 나트륨 함량이 99%이상인 미원은 면제할 수 있음), 글루타민산 나트륨 함량, 순합량, 생산일자
 - 조미향료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단일한 원료는 면제할 수 있음), 순합량, 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수입음료수
 - 탄산음료 : 식품명칭, 상품유형(과즙형, 과일맛형, 콜라형, 기타형에 따라 구분), 순합량, 원료배합도표(물 혹은 탄산수 포함),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과일주스형은 반드시 과일즙 함량을 표기해야 함.

- 과일주스 음료 : 식품명칭, 상품유형,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과일주스, 과일주스음료, 과립포함 음료는 과일원즙의 함량을 표시해야 함. 과육 과일주스 음료는 반드시 果漿함량을 표기해야 함.
- 식품단백음료 : 식품명칭(동시에 식품단백음료 글자표시), 원료배합도표, 단백질함량,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음료용 천연 광천수 : 식품명칭, 상품유형(이산화탄소 포함과 불포함 구분), 수질주요성분,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고체음료수 : 식품명칭, 상품유형(과일향형, 단백질형, 기타형에 따라 구분), 원료배합성분,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飲用방법 과일즙이 포함된 것은 반드시 원즙 함량을 표기해야 함. 단백질형은 반드시 단백질 함량을 표기해야 함.
- 우유음료 : 식품명칭, 상품유형(우유음료와 유산균 우유음료 구분), 단백질 함량, 원료배합도표,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냉동음료(아이스바, 아이스크림)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순합량(克 또는 그램으로 표시), 생산일자(아이스바, 아이스크림은 외포장, 박스상에 표시할 수 있음)
- 수입술
 - 백주(白酒) : 식품명칭, 원료(혹은 원료와 배합원료), 알콜농도(에틸알콜), 순합량, 생산일자
 - 황주(黃酒) : 식품명칭, 상품유형(干黃酒, 半干黃酒 등에 따라 구분)혹은 당도, 원료(원료 혹은 배합원료), 알콜농도(에틸알콜 함량),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 유효기한
 - 맥주 : 식품명칭, 원료(혹은 원료와 배합원료 : 물 포함), 보리원즙농도, 알콜농도(에틸알콜 함량),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포도주, 과일주 : 식품명칭, 원료

(혹은 원료와 배합원료-단일한 원료는 면제할 수 있음), 과일 원즙 농도(100%원즙 포도주는 면제할 수 있음), 당도 혹은 상품유형, 알콜농도(에틸알콜 포함), 순합량, 생산(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100% 포도주는 면제할 수 있음)

- 증류주(브랜디, 위스키 등) : 식품명칭, 원료(혹은 원료와 배합원료), 알콜농도(에틸알콜 함량), 순합량, 생산일자
- 배합제조술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식품첨가제와 위생부가 허용허가한 식품인 동시에 약품물질이라는 것도 포함), 알콜농도(에틸알콜 함량), 순합량, 생산(포장)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 수입꿀 : 식품명칭, 꽃종류, 순합량, 생산일자
- 수입특수영양식품(아동식품, 영양강화식품, 영양조절식품-예를 들면 저당식품, 저나트륨식품, 운동선수식품-등을 포함) : 식품명칭, 원료배합도표, 열량, 영양소(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비타민, 광물질(미량원소 포함), 순합량, 생산일자, 품질보관 유효기한, 저장방법, 아동처방식품, 분유, 아동대용분유 등은 반드시 “모유는 영아의 가장 좋은 영양원이다” 혹은 “모유는 영아의 가장 좋은 음식이다”고 명확히 표기해야 함.

□ #위반시 제재사항

- 식품라벨위법행위조사 처벌규정(1995년 3월 8일 공포)에 따르면 아래에 기재된 행위에 해당될 경우 생산, 판매정지 명령 처벌이 가해지고 500元이상 1,000元이하의 과태료 또는 식품금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 식품라벨상 질량등급, 제품인가번호 및 방사선가공처리식품 표시등 반드시 기재해야 할 품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 식품라벨의 내용이 잘못되어 있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기만 방식으로 식품을 묘사 또는 소개했을

경우

- 식품라벨의 내용이 직·간접적으로 암시성의 언어, 도형, 부호를 사용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식품 또는 식품의 어느 성질을 다른 식품과 혼동하게 될 경우
- 식품라벨의 내용이 법률, 법규의 규정과 제품기준에 위반할 경우
- 아래에 기재된 행위에 해당될 경우 생산, 판매정지 명령처벌이 가해지고 1,000元이상 3,000元이하의 과태료 또는 식품금액의 15%에 상당한 금액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
- 식품라벨상의 식품명칭, 용량, 고형물 함량, 생산(개별포장)자 이름과 주소, 생산(개별포장)일자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및 원료성분표, 유통기한 표시 등 반드시 기재해야 할 항목을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

2. 수입규제 제도

가. 수입금지

- 중국의 관련부처는 허가품목이든 비허가품목이든 동 품목의 수입이 국가 개발품목에 부합되지 않거나 국내대체품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는 수입을 불허함.
- 중국의 수입금지제도는 품목지정 수입금지제로 이루어짐. 1992년 9월 25일 공포된 식물검역법상 수입금지품목과 지역은 위험성 병·해충 전염방지를 위해 선정되었는데 옥수수종자, 대두종자, 감자, 고무씨, 담배잎 담배 번식재, 과일 및 가지, 고추, 토마토 등이 포함되어 있음. 한국의 농수산물 제품 중 수입금지품목에 해당하는 품목은 없음.

나. 수입제한

- 중국의 대표적인 수입제한조치는 수입허가증제도와 수입검사제도, 특정상품 자동등록관리제도 등이 있음.

- 수입허가증제도는 外經貿部에 의해 1996년 3월 14일에 공포돼 시행중인 수출입허가증 발급기관의 허가증 발급규범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피동적 할당관리 상품인 방직품을 제외한 수입허가증 관리대상이 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입상품의 주문이전에 대외무역 주관기관에 수입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아야 하며 수입허가증이 없으면 통관이 불가능함.
- 무역기업이 아닌 기관이 수입허가를 신청하여 이를 발급받으려면 신청서류와 함께 반드시 그 주관 부서(司, 局級 이상)가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허가증을 처음으로 신청하는 기업은 반드시 신청서류에 外經貿部 또는 지방 무역 주관부서에 의해 승인된 수입경영권을 입증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해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이 처음으로 허가증을 신청하여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류외에 주관부서가 발행한 해당기업 승인증명서와 영업허가증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 식량의 수입은 국가계획위원회가 권한을 부여한 수입등록기관에 의해 서명발급되는 특정상품 수입등록 증명인 수입허가증이 있어야 함.
- 탄산음료는 국가계획위원회가 발급하는 수입증명이 있어야 수입허가증이 발급됨.
- 중국정부는 1994년 4월 13일 “특정상품 수입자동등기 잠정조치”를 제정하여 대상품목에 대해 자국내 수요처가 확정되고 수입허가지역내에서 수입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될 때만 수입등록을 허가해 줌으로써 사실상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음.
- 대상품목은 15종 449개 품목이며 곡물, 주류, 식물유, 과일 등이 포함돼 있음.
- 즉, 과일은 수입허가 관리대상품목은 아니고 1994년 수입할당 대상품목에서도 제외되었으나 특정상품자

동등록관리제도를 통해 수입을 계획 규제하고 있음.

- 중국은 설탕, 소맥, 옥수수, 쌀, 면화, 식물유, 술, 탄산음료 등 주요 농산물은 수입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해 수입을 엄격히 관리 통제하고 있음.
- 곡물과 주류는 비쿼터수입허가 관리 품목에도 해당되기 때문에 특정상품 등기 증명을 발급받은 후 다시 이 증서를 근거로 수입허가증을 취득해야 함.

다. 수입할당(쿼터)

- 현재 수입쿼터 및 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은 35개인데 이중 28개는 일반 수입쿼터대상이며 수입쿼터는 필요 없으나 수입허가증이 필요한 품목은 7개에 달함.
- 가공무역용 일반품목 즉 면화, 식용유, 양털, 설탕 등 4개품목에 대해서는 1998년 1월 1일부터 별도의 수입쿼터 부과 적용되고 있음.
- 수입쿼터증명을 발급받은 후 수입허가증을 신청하는데, 수입쿼터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며 유효기간내 수입허가증 신청, 발급받지 않는 경우 무효가 됨.

라. 반덤핑

- 중국은 1997년 3월 25일 국무원령 제214호로 반덤핑 반보조금조례를 제정, 공포하였음.
- 동 조례는 중국의 대외무역법 제30조인 “상품이 정상가격이하로 수입되고 이로 인해 국내의 관련산업에 실질적인 손해를 초래하거나 실질적인 장애가 될 경우 국가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손해위협장애를 제거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고 한 규정과 제31조인 보조금을 받고 수출한 상품으로 인해 받는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을 두고 있음.
- 반덤핑 반보조금 조례는 총 6장 42개조로 구성된 독립법의 형태를 갖

추고 있는데 그 내용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골격을 갖고 추고 있음.

- 즉, 절차에 있어서는 신청 조사결정 초보조사(예비조사), 심층조사(본조사), 관세부과 등을 규정하고 있고 조사기간은 원칙적으로 12개월로 하되 최장 18개월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하였으며 조사는 덤핑률조사와 산업피해조사로 구분하였고 최소부과원칙, 재심사, 환급 등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은 신청인의 신청없이도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대외무역경제협작부가 국가경제무역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직권조사, 우회덤핑행위방지, 중국상품에 대해 차별적인 반덤핑 혹은 반보조금 조치를 취했을 경우 당해 국가에 상응한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규정이 있음.
- 중국의 반덤핑제도 운용기관은 대외

무역경제협작부, 국가경제무역위원회, 관세세칙위원회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덤핑률 조사는 대외무역 경제협작부가, 산업피해조사는 국가경제무역위원회가, 덤핑방지관세부과는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가 각각 담당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마. 비관세장벽 및 기타 수입규제조치

- 각종 수입 및 통관절차상의 제한, 상품의 품질 위생 포장 및 라벨링에 관한 규제, 투자관계 규제, 수입관리 제도의 투명성 결핍, 무역정책의 통일성 결여, 중국내 복잡한 거래관행 구조, 지나친 행정간섭 등을 들 수 있음.
- 기타 수입규제조치로 수입전담회사의 지정(지정품목: 밀, 식용설탕 등), 기계전기제품 수입관련 제한, 특정상품자동등기관리, 수입물품 품질안전검사 등을 들 수 있음.

□ 이 글은 농수산물유통공사에서 발행한 「中國 農産物貿易 핸드북」(1999)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